

3. 駐車場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13號 交通部令 第984號 1992. 9. 5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 조제3호라목중 “군수가”를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단지조성사업”을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대로변”을 “대로변·도시철도역”으로 하고, 동조제5호다목중 “주차대수”를 “일방통행 도로이거나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주차장 출입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 주차대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관리소”를 “관리사무소”로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계장치의 성능 및 안전도 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노외주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100대 미만인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본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호의 규정”으

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균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로 : 50룩스이상
2.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 20룩스이상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

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뒷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뒷면,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뒷면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명장치 및 방법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법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이유 □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조명기준을 높이고, 대형판매시설등의 주차장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의 방법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소형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접한 도로가 일방통행로 이거나 주차장 출입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제5조제5호).

나.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최하 20룩스에서 최고 50룩스이상 조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중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의 노외주차장 및 대형판매시설·숙박시설등의 부설주차장은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조제2항).

다. 주차대수 100대미만인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면도 및 토지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제7조제1항).

〈건설부 제공〉 〈교통부 제공〉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